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19가단52345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송호섭, 이영현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정의권, 조민정

변론 종결 2022. 4. 8.

판결 선고 2022.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16,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22. 5.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116,926원 및 그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1. 29.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11. 28.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4299 판결) 항소하였으나, 2019. 3. 27.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9. 4. 4.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8030 판결).

나.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94. 6.경부터 2009. 5.경까지 5개 보험회사에 총 6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7. 5. 31.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상습으로 입원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어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2007. 5. 31.부터 2015. 1. 30.까지 62,266,645원이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입원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한 돈에서 적정입원일수에 상응하는 부분 및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계하여 변제받은 부분을 제외하면 35,116,92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중 적정입원일수에 상응하는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35,116,92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¹⁾ 이 판결선고일인 2022.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 범위는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청구 중 상당 부분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만약 이 사건 청구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수사기관에서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던 2015. 6. 17.경에는 원고가 피고의 보험금 편취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

다. 먼저 상사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청구는 보험자인 원고가 일반 개인인 피고와의 보험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과다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형사재판의 결과 드러남에 따라 원고가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던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는 상법 제64조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옳다.²⁾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단기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고가 상습사기죄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원고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존재함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2018. 11. 28.로 봄이 옳은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7. 30. 제기되었으므로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³⁾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균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의 책임범위는 원고의 2021. 8.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구하는 금액과 같으나(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 다음과 같이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즉 원고는 최초 피고가 받은 보험금 62,266,645원 전액을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위 돈에서 적정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자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다.

2)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참조).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